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3

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김예지·백종헌·정희용

김선교 • 김미애 • 한지아

김승수 · 최형두 · 임종득

최수진 · 서천호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 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일정한 인원·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 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 들 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가 가능함.

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'장애인 표준사업장'과 '이동지원센터'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3).

법률 제 호

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3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1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
- 12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 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	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
취업제한 등) ① 법원은 장애	취업제한 등) ①
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	
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	
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	
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	
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	
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	
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	
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	
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	
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	
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	
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	
유예 • 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	
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	
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	
(이하 "취업제한기간"이라 한	
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	
시설 또는 기관(이하 "장애인	
관련기관"이라 한다)을 운영하	
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	
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	

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업 제한명령"이라 한다)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이하 "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"이라 한다)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 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 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 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~ 10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③ (생 략)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
재활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
장애인 표준사업장
12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
진법」 제16조제2항의 이동
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
의 광역이동지원센터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